

2024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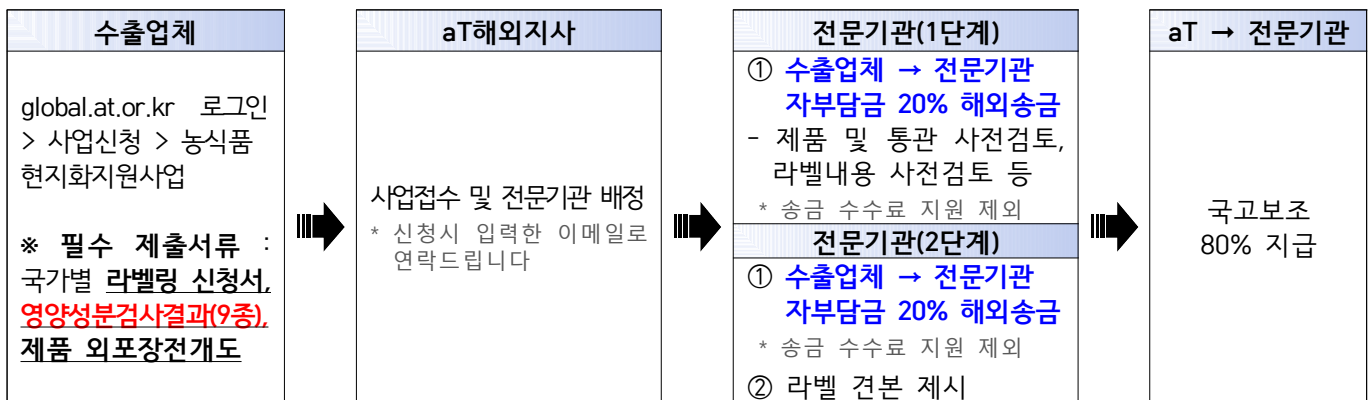
- 라벨링 현지화 -

- 지원대상 : **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**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
-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* 공산품, 수산식품 지원 제외
-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
(1단계) 사전검토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 통관 관련 사전 검토, 현지 라벨링 제작 기본 규정 안내 등 ○ (일본, 홍콩, 베트남, 라오스, 몽골) 별도 견본 제작지원은 없으며, 기존 라벨 제출 시 현지법에 따른 내용 검토 및 제작방향 자문가능 	80%
(2단계) 라벨링 제작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 자문 및 견본 제시 (영양성분, 용량, 유통기한, 보관방법, 제조·수입업체 정보 등) * 동판 제작,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지원 제외 	

※ 1단계 사전검토결과 수출에 문제가 있거나 통관불가인 경우(수출입제한 및 규제성분 포함) 2단계 지원불가

○ 진행절차 안내



※ (예외) 홍콩/대만의 경우, 수출업체가 100% 선지출 후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시 자부담 20%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80%를 환급하며, 환급시기는 3, 6, 9, 12월임 / '25년부터 예외없음

○ 지원국가 : 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 참고

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○ 유의사항

- ▶ 자부담금 상당기간(1개월) 미입금, 서류 미비, 연락두절 등의 경우 사업신청이 취소 될수 있음
- ▶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현지화지원사업 자문만 지원 가능
- ▶ 한번에 1개 국가, 최대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하며,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
- 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**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며**,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
- ▶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해외 식품검사비 별도 지원가능

* 국가별 지원여부 상이할 수 있으며 샘플물량 발송비 등 별도 비용은 지원불가, 국내 식품검사비 지원불가

▶ aT 사업 최초 신청 시 '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' 필수

* 한국무역통계진흥원(www.trass.or.kr/at.jsp) 접속 > 사업자공동인증서로 동의하기